

지식재산권 표시지침

[소관 : 산업재산보호정책과]

제정 2019. 10. 28. 고시 제2019-17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상표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키고,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허위표시”라 함은 특허법 제224조, 실용신안법 제44조, 상표법 제224조,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의 허위표시를 말한다.
2. “부당한 표시”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3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특허·실용신안의 표시방법) ① 특허법 제2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,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,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“특허”, “방법특허”에 해당하는 용어의 영문(약어)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.
- ③ “특허출원(심사중)”, “방법특허출원(심사중)”이라는 용어는 “출원”이나 “심사중”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④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인터넷표시는 바코드,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. 다만, 인터넷표시는 특허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⑤ 그밖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특허·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⑥ 실용신안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제4조(상표의 표시방법) ① 등록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상표출원 중인 경우, “상표출원(심사 중)” 또는 “상표 출원”, “상표 심사 중”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③ “등록상표”라는 용어 외에 “상표등록”, “상표”, “상표권”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, 해당 용어의 영문(약어)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. 또한, 등록상표에 한해서 ㉔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.

④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. 이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,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. 다만, 인터넷표시는 상표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⑤ 그밖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제5조(디자인의 표시방법) ①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, “디자인 출원(심사 중)” 또는 “디자인 출원”, “디자인 심사 중”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③ “등록디자인”이라는 용어 외에 “디자인 등록”, “디자인”, “디자인권”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, 해당 용어의 영문(약어)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.

④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. 이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,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. 다만, 인터넷표시는 상표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⑤ 그밖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제6조(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) ① 특허권 등 권리가 있었으나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생산되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경우, 그 상품의 광고 등에는 그 권리를 표시할 수 없다. 다만,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, 포장, 용기 등(이하 ‘제품 등’이라 한다)에 그 권리가 표시된 경우,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특허권 등 등록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제품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인터넷표시나 제품 등에 권리의 존속 기간을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

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후에 유통되고 있더라도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권리소멸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특허청 로고 등의 사용) ①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 및 제품 등에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산업재산권을 등록받은 경우에는 등록 당시나 현재의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을 권리 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광고 및 제품 등에 '특허청 인증', '특허청 허가' 등 특허청이 제품의 품질을 인정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(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) ①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허위표시의 삭제, 수정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안내하거나, 허위표시 행위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3조, 제3조의2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경우, 특허청에서 동법 제7조에 따라 조사한 후, 이에 해당하면 동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할 수 있다.

②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경우,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청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할 수 있다.

③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시정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시정권고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한다.

④ 시정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한다. 다만,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시정권고를 다시 할 수 있다.

⑤ 허위표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, 위에 규정한 내용 외에는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」에 따른다.

부칙 < 제2019-17호, 2019. 10. 28. 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